



노후긴급자금대부(실버론)

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?

Q1

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의료비로 1,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빌릴 수 있는 대부 금액은?

- A 개인별 한도액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.
- 대부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(최고 1,000만원) 이내 실 소요비용에 대해 대부
 - 개인별한도액 720만원 = 30만원 × 24개월

Q2

최고 1,000만원까지 대부 가능한 수급자가 700만원만 대부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, 300만원 추가 대부가 가능한가요?

- A 아니요. 개인별 한도액 중 실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대부 가능하며, 한도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대부가 불가합니다.



노후긴급자금대부(실버론)

어떤 점이 좋은가요?

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습니다.

대부금을 조기상환 하더라도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.

상환원리금을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 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공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

갑자기 닥친 어려움 앞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
노후긴급자금대부(실버론)

청년
국민연금

- 노후긴급자금대부(실버론) 문의는?
☎ 국번없이 1355(유료)
- 노후긴급자금대부(실버론) 신청은?
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주세요.
- 부조리신고
국민연금 홈페이지(www.nps.or.kr)
☎ 신고센터

NPS 국민연금공단
National Pension Service

NPS 국민연금
National Pension Service

**노후긴급자금
대부(실버론)가
도와드립니다.**



노후긴급자금대부(실버론)란?

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(주택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)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입니다.



자세한 상담은
국번없이 1355(유료)



신청대상

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, 분할연금,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(1~3급) 수급자가 해당됩니다.

신청제의 대상

-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황이 완료되지 않은 자
- 외국인 및 재외동포/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
-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·정지 또는 총당 중인 자
- 장애4급 수급자, 연금급여 해외송금자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1급여이상 받는 자)
- 대부자 중 위·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



대부금액

연간 연금수령액*의 2배(최고 1,000만원)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신청 당시 산정된 연금월액 기준



대부용도

- **주택 전·월세보증금** :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·월세보증금
- **의료비** :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
*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
- **배우자장제비** :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
- **재해복구비** :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



용도별 신청기한

- 전·월세보증금 : (신규) 임차개시일 전·후 3개월 이내
(갱신)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


신청 필수서류(용도별)

공동서류

- 대부신청서, 대부약정서(공단 비치)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 등(공단 비치)
- 본인신분증(본인 지참)

용도별 기본서류

- 전·월세보증금 : 주택 전·월세계약서, 계약금 송금내역서
(확정일자, 주소전입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)
*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, 직계존·비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,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
※ 계약 사실 임대인 통화 확인
- 의료비 : 진료비(약제비)계산서·영수증*
* 상세내용(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) 기재된 영수증
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, 장제비영수증
- 재해복구비 :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

추가서류

- 대부 용도별 세부 조건에 따라 상담 및 대부 신청 시,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가 안내됩니다.



이자율

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
(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)

* (참고) 근래 평균 대부이자율은 연1.12%~3.60% 수준



대부금 지급

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한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

※국민연금 전용계좌(안심통장)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

※ 현금 지급 불가,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



대부금 상환

• 상환기간

- 최대 5년 이내, 원금균등분할 방식
- * 거치기간(1년 또는 2년)을 선택 시, 최장 7년
- *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/20이하로만 설정 가능
- *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대부금 상환(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 가능)



신청방법

방문 신청 전 콜센터(☎ 1355 유료)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 하셔서 대부용도, 신청자격,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

이것만은 유의하세요!

- 위·변조 등 허위 신고,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 신고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부당대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(연체이자율 적용, 거치기간 없이 연금액 1/2 강제상환, 3년 대부 제한 등 벌칙적용)
-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 추가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.